국세부과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11. 12. 7. 2011누22534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원고

【피고, 피항소인】 반포세무서장 외 1인 (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, 담당변호사 김영진)

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구합5155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1. 11. 2.

【주문】

]

- 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- 2. 원고에 대하여,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. 8. 22.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7,381,044원, 2002년 2기 7,525,219원, 2003년 1기 7,215,887원, 2003년 2기 7,414,042원, 2004년 1기 7,194,995원, 2004년 2기 7,092,155원, 2005년 1기 12,863,016원, 2005년 2기 12,594,474원, 2006년 1기 12,663,643원 각 부과처분,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. 8. 17.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3,464,268원, 2002년 귀속 26,738,108원, 2003년 귀속 38,376,096원, 2004년 귀속 34,899,232원, 2005년 귀속 52,518,664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주문과 같다.

[이유]

- 】1. 처분 경위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, 3쪽 9째줄 '작성한 후' 다음에 '(원고 처인 소외 1이 한 신고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탈루나 오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)'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-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- 2.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적법 여부
 - 가. 원고 주장
-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(2006. 12. 30.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, 이하 같다) 제81조의5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다.
-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무런 해당 사유도 없는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한 잘못을 범하였다.
- 설령 소외 1에게 세무조사를 개시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1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 서초구 (주소 1 생략) 토지 및 건물(이하 '쟁점 부동산'이라 한다) 취득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였다.
-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관행에 따라 금융기관에 소외 1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, 이렇게 획득한 자료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.
 -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임의로 개시된 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.
-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도 임의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후 세무조사 명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·제공받았는데 이는 적법절차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위법하다.
 - 나. 관계법령

별지 '관계법령' 기재와 같다.

다.

판단
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에 의하면,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,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.
- 제2항, 제3항, 제4항은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.

세무조사가 납세자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,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,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한편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,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

- 갑 2, 3, 7호증, 을 1, 2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-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1이 2004. 6. 10. 28억 6,700만 원에 달하는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세무신고 자료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 소외 1 재산 현황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
-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1 남편인 원고가 서울 서초구 (주소 2 생략)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가 임대소득을 탈루하여 조성한 자금을 소외 1에게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다.
-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.
-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1호, 제4호, 제5호, 제4항, 구 조사사무처리 규정(2007. 7. 27. 국세청훈령 제16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것, 이하 같다) 제3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 게 개시되었다고 주장한다.
-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1호가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'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,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·교부·제출, 지급조서 작성,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'이다.
 -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한 신고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일 뿐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가 신고 등 세법이 정하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- ② 제4호가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'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'이다.
-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1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세무신고 자료나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 소외 1 재산 현황에 비추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원고이고, 원고가 임대소득을 탈루하여 해당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혐의는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막연한 추측에 따른 것이다.

- ③ 제5호가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'국세청장이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'이다.
-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소외 1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어떠한 결과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.

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도 분석을 하였고,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- ④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4항이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'과세관청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'이다.
-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인데, 피고는 당심소송 계속 중 위 사유를 추가하고 있다.

양자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세목은 '개인제세 통합조사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원천세 등 관련 세목 통합 조사)'이므로 과세관청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다.

⑤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'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효율성,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출자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'는 것이다.

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는데,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, 법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개시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.

또한 위 조문 내용에 의하면, 관련인이 독자적으로 세무조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존 세무조사 대상자인 특정인과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인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 개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.

이는 제4항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련인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선정, 세무조 사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.

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.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.

3. 결 론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[별지 관련법령 생략]

판사 김문석(재판장) 김동현 정석종